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877
----------	------

제출연월일 : 2025년 5월 2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우리 교육청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나.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 운영 개요

운영방식	정 원	교직원	보육실	예산소요액	본예산 편성액	개원시기
위탁	60명	15명 (예정)	6실	10억원 (1년)	6억 5천만원 (1년)	2026년 중
7개 시도교육청 위탁 운영 중	놀이터 면적 (212.22㎡) 기준에 의한 산출	· 원장 : 1명 · 교사 : 12명 · 조리원 : 1명 · 사무원 : 1명	0세 ~ 5세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등 (1년 기준)	· 교육청 부담: 65% · 사업주 부담: 35%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추진 필요성

- 신청사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운영체계 구축 필요
- 민간 위탁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 대응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보육 원아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교직원 임면, 시설물 관리 등

라. 민간위탁 기간 : **2년(2026년 ~ 2028년)**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예: 개원 시기 등)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 준용
- 수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9명 이내
- 공모 후 접수된 제안서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선정

바. 예산 규모

- 어린이집 연간 운영비(예상) : **10억원** 내외(1년)
- 우리 교육청 민간 위탁 지원비(예상) : **6억 5천만원** 내외(1년)

어린이집명	구분	인건비	운영비	보육 활동비	수익자 부담경비	재산 조성비	기타	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가칭)	연간 운영비 합계(100%)	550,000	100,000	150,000	50,000	150,000	-	1,000,000
	민간위탁 지원금액(65%)	357,500	65,000	97,500	32,500	97,500	-	650,000

3. 참고사항

가.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 [별첨]

나.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4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총무팀 / 2025. 5. 19. (월)】

I 배경 및 목적

- 우리 교육청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제고하고자 함

II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계획(총무과-14079, 2025. 5. 14.)[교육감 결재]

III 추진 방향

- 민간 위탁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질 및 만족도 제고

IV 추진 개요

- 위탁 대상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개원 시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가칭)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신청사 부지 내	527.71㎡ (지상 2층)	60명	2026년 중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2026년 ~ 2028년)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보육 원아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교직원 임면, 시설물 관리 등

- 위탁업체 선정방법 : 공개경쟁

V

자격 요건

□ 신청 자격

- 법인·단체 : 어린이집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개인 :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 공통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원장으로 채용[법인·단체는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지역 유경험자 우대)하여 신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갖춘 자(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 신청 제외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를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주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VI

위탁업체 지원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지원 개요

- 위탁 지원비 : 어린이집 연간 총 운영비의 65% 이상 지원
- 어린이집 연간 운영비(예상) : 10억원 내외

○ 우리 교육청 민간 위탁 지원비(예상) : 6억 5천만원 내외(1년)

어린이집명	구분	인건비	운영비	보육 활동비	수익자 부담경비	재산 조성비	기타	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가칭)	연간 운영비 합계(100%)	550,000	100,000	150,000	50,000	150,000	-	1,000,000
	민간위탁 지원금액(65%)	357,500	65,000	97,500	32,500	97,500	-	650,000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예산 내역 변동 가능

VII 세부 추진 일정

□ 개원 시기별 추진 일정

시기	개원 시기별 추진 내역		비고
	1안(7월 개원)	2안(9월 개원)	
2025.5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본계획 수립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본계획 수립	
2025.6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동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동의	5월 의안 제출
2025.8월	2026년도 본예산 제출	2026년도 본예산 제출	
2025.12월	직장어린이집 수요 조사	직장어린이집 수요 조사	직원 대상
2026. 1월	어린이집 위탁 사업자 선정		
2026. 3월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어린이집 위탁 사업자 선정	
2026. 5월	원아 모집 공고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2026. 6월		원아 모집 공고	
2026. 7월	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2026. 9월		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 해당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VIII 기대 효과

□ 보육의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 운영 확보

- 보육 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인력 채용·운영 등 관리 전반에 있어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

□ 직원 복지 향상 및 조직 만족도 제고

-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직장 내 복지수준 향상으로 인한 조직 만족도 증대

붙임 1. 참고법령 1부

2. 참고자료(타 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1부. 끝.

붙임 1 참고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참고 자료

□ 타 기관 직장어린이집 예산 편성 내역

(2025. 4월 현재, 아이사랑 보육포탈 공개자료)

연번	어린이집명	인건비	운영비	보육 활동비	수익자 부담경비	재산 조성비	기타	계
1	국회제3어린이집	1,464,530	71,701	197,680	115,350	20,000	32,321	1,901,582
2	국방부청사어린이집	2,307,879	356,383	551,434	55	133,600	40,902	3,390,253
3	아모레퍼시픽 서울어린이집	954,580	344,405	169,498	87,222	1,000	29,500	1,586,205
4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1,788,371	334,321	375,250	108,028	160,000	134,030	2,900,000
5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491,939	71,918	144,656	-	15,395	3,099	727,007
6	전라남도교육청 꿈자람어린이집	546,118	83,113	157,990	-	26,838	863	814,922
7	경북교육청어린이집	516,320	36,392	59,472	23,002	1,200	521	636,907
8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가칭)	550,000	100,000	150,000	50,000	150,000	-	1,000,000

□ 타 기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지원금 편성 내역

(2025. 4월 현재, 아이사랑 보육포탈 공개자료)

연번	어린이집명	정원	현원	연간운영비 (백만원)	민간위탁경비 지원금 (백만원)	지원비율
1	국회제3어린이집	118	91	1,901	1,140	60%
2	국방부청사어린이집	220	154	3,390	비공개	비공개
3	아모레퍼시픽 서울어린이집	94	79	1,586	951	60%
4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195	138	2,900	1,943	67%
5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60	41	727	400	55%
6	전라남도교육청 꿈자람어린이집	54	51	814	540	67%
7	경북교육청어린이집	50	35	636	350	55%
8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가칭)	60	-	1,000(예정)	650(예정)	65%